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부패제로 청정보령

보령시

- 2021년 ○○○ -

종 합 감 사 결 과

보 령 시

(기획감사실)

BORYEONG

2021년 ○○○ 종합감사 결과

BORYEONG

Ⅰ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회계, 사회복지, 산업, 민원 등 대민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확인하여 시정·개선하여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감사실시 현황

○ 감사대상 : ○○○

○ 감사기간 : 2021. 8. 2. ~ 8. 5. (4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인

○ 감사범위 : 2019. 5.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

❑ 감사 주요 지적사항

○ 예산회계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소홀 등

○ 복지분야 :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급 및 장애등급 재판정 소홀 등

○ 건설공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건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등

○ 산업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등

○ 민원분야 :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관리 및 인감증명 발급 소홀 등

○ 기타분야 : 연가보상비 지급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

❑ 감사 지적사항

【제　　목】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소홀

지급제외 대상인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대상자에 대하여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를 0회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제　　목】 장애인 재판정 안내 및 촉구 절차 미 준수

장애정도 재판정안내시 재진단기한 3개월 전 안내 기한 미 준수(0건) 하였으며, 재진단기한 1개월 전에 재판정 촉구 통지 기한 미 준수(0건) 등 장애인 재판정(촉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출장 여비 집행 시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일비를 1만원 감액처리하지 않아 총 0명에 000,000원의 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소홀

공사 0건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

20◈◈년 0월부터 20○○년 0월까지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총 00건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최대 0일 미리 지급하거나, 최장 0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이장 월정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20◈◈년 0월부터 20○○ 0월까지 전입신고 000건에 대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실시하면서 전입자의 거주여부 확인 누락 000건, 이장 거주여부 확인 누락 00건, 담당공무원 서명·날인 누락 000건 등 주민등록 전입신고사항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 무인을 누락 00명, 위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 00건, 발급통수 미기재 0건 등 총 00건의 위임장에 대해 누락된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신청하는 자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으로 발급하였고, 한 세대원인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세대 농지 상한 면적 1,000㎡ 초과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농업경영'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건설공사 고용, 산재 보험료 미 반영

공사 00건을 시행하면서 산출 내역서에 미 반영 및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산업 재해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하자보수보증 관련 업무 소홀

공사 00건 사업의 하자보증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 규정을 미 준수하였으며, 공사 00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징수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제　　목】 건설공사 제경비 사후 정산 부적정

공사 0건을 시행하면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 하였는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용내역이 없음에도 별도의 정산처리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00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거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확인 및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거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적법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0,00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매년 맨 처음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고지안내를 최장 0월 00일 늦게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0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대부가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실무수습 발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연가일수 산정오류등에 따라 각각 00,000원 과다 지급 및 00,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목】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관리 소홀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방역약품 수불대장과 유류수불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